

제284회 임시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367호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367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8. 23.
- 회 부 일 : 2021. 8. 26.

2. 제안이유

관내 노후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등)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고자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3조1)
- 설치목적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설치연도 : 1995. 3. 6.(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제정 2006. 5. 30. 조례 제655호)

-
- 1) 제13조(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
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
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이상) 2. 교부금 및 보조금 3. 삭제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청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재건축, 이전신축 포함)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기본조사 설계, 실시설계,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원

○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돈암1동 주민센터 건립 : 3,556,000천원
- 정릉2동 청사부지(국유지) 매입 : 192,660천원
- 석관동 경로당 건물 리모델링비 등 : 100,000천원

다. 2021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 기금변경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기금규모 (수입·지출)	58,333,491	69,940,439	11,606,948

-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 11,606,948천원 추가 편성

○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조 성 액	사 용 액	2021년말 조성액 (잔액)
69,940,439	3,849,780	66,090,659
·예치금 : 37,569,697 ·전입금 : 31,770,742 ·이 자 : 600,000	·위원회 운영 등 : 1,120 ·시설비 ²⁾ : 3,848,660	·2022년도로 이월

2) 돈암1동 주민센터 건립 : 3,556,000천원, 정릉2동 청사부지(국유지) 매입 : 192,660천원
석관동 경로당 건물 리모델링비 등 : 100,000천원

4.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³⁾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⁴⁾

5. 검토의견

2021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내 공공 청사건립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용청사 건립에 안정적인 제원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고자, 기존 전입금 20,163,793천원에서 31,770,742천원으로 전입금 11,606,948천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3)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4)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이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관리관, 기금분임경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